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C 및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(반소피고)에게 143,085,564원 및 그중 35,282,503원에 대하여는 [redacted].부터, 69,786,643원에 대하여는 [redacted].부터, 38,016,418원에 대하여는 피고 D은

[redacted]부터, 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C은 [redacted]부터 각 [redacted]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[redacted] 관하여,

가. 피고(반소원고) B는 원고(반소피고)로부터 [redacted]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고,

나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 B에게 [redacted]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C의 반소청구 및 원고의 피고(반소원고)들,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 중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하고,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하고,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